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46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12. 1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(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 조례 근거 개정

2. 주요내용

제1조(목적)의 세부근거 개정 :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→ 제117조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17조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1. 11. 4. ~ 11. 24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중 “제104조” 를 “제117조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달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제117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□ 지방자치법[시행 2022. 1. 13.] [2021. 1. 12., 전부개정]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